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 실시 근거 신설〉
■ 이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07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 실시 근거 신설	2
※ 참고자료	9
1. 한국디자인진흥원 현황	9
2. 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	11
3.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관련 사업	12
4. 산업디자인 관련 지원기관 현황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4.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 실시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위한 지원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 제12조는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및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역량제고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이 법 제정 당시(1999. 2. 5. 제정, 1999. 6. 1. 시행) 성안되어 유지(2024년 7월말 기준)되고 있는 조문임.

산업디자인은 제품·상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여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자극,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디자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종합계획 수립, 산업디자인 육성·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지원 등) 및 이러한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체계를 규정¹⁾하고 있음.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디자인 관련 개발 지원사업, 전시사업, 교육·연수사업 등을 수행²⁾³⁾함.

그런데 정부 내 산업디자인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정부 차원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여성기업 육성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등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러한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 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현황은 [참고자료 1]을 참조

4) 2022년도 국정감사 회의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2022년10월24일자), p.74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지원사업 추진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관련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정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제2호),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지원(제3호)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 육성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데에 개정안의 실익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이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 주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 지원 주체를 현행과 같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수정하되 현행법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개정안과 같이 지원사업의 실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하는 규정(안 제12조제2항 신설)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음.

즉, 개정안과 같이 위탁 수행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전문기관(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의 경우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지, 혹은 사업수행방식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위탁대상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특정할 경우 지자체 경제통상진흥원 및 지역디자인센터, 디자인 대학,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다른 디자인 지원기관⁶⁾⁷⁾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법률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경쟁입찰 또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안 제12조제2항 삭제)을 제시함.

셋째, 안 제12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지원사업 외에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⁸⁾.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8)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 문안 전반을 살펴봐도 지원사업 실시 이외에 여성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

넷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의 실시⁹⁾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의 발생 가능성¹⁰⁾을 예상하였는바,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4년 7월말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의안번호 2200510호)¹¹⁾이 회부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3

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지원사업 실시 이외에 필요사항이 없는 경우 법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의 “지원사업등”의 문안을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9) 국회예산정책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4. 7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디자인 개발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긴 하지만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별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10) 국회예산정책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4. 7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으나, 구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의 경우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기 전이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렵다고 함.

11)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510호).

【참고자료 1】 한국디자인진흥원 현황

1. 한국디자인진흥원 개요

□ 설립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에 따라 산업 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주요연혁

- 1970. 0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디자인·포장진흥법)
- 1997. 01.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산업디자인진흥법)
- 2001. 04. 한국디자인진흥원 출범
- 2015. 02.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완공 및 입주(경상남도 양산시)
- 2019~22.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7개소)

□ 주요업무

- 디자인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제품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 우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 디자인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 디자인 홍보·출판·전시 및 정보 제공
- 제조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 기타 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위탁사업

□ 예산·인력 현황(2024년)

- 예산: 618억원
 - * (자체) 9,208백만원, (출연) 32,394백만원, (수탁) 16,362백만원, (이월) 3,814백만원
- 인력: 180명(기관장 1, 일반직 130, 기능직 1, 공무원 48)

2.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여성기업 지원 현황

□ 여성기업 지원사업 현황 : 별도 존재하지 않음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설립근거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은 산업디자인을 업으로 삼는 모든 기업
 - 다만, 일부 사업평가에서 동점 발생 시 여성기업에 우대를 주는 형태는 존재

<한국디자인진흥원 추진사업 中 여성기업에 관한 우대 사례>

- 「스타일산업 신생태계 구축사업」의 유망기업 성장지원 분야 기업 모집 시 여성기업 우대
 - 선정평가 동점 기업 발생 시 우선 선정
-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의 기업 모집 시 여성기업 우대
 - 선정평가 동점 기업 발생 시 우선 선정

【참고자료 2】 중소기업부 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 (중소기업 전체 대상)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개 요	중소기업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유형: 일반, 탄소중립, 재기컨설팅)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년예산	55,805백만원	
디자인 관련	지원내용	제조업 영위 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바우처 서비스 중 디자인개선(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 비용지원 * 바우처 한도: (디자인개선) 15백만원, (브랜드) 20백만원
	운영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22년예산	2,629백만원 (바우처 발급기준)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개 요	국제운송비, 법률자문, 컨설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3년예산	119,710백만원	
디자인 관련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분야 및 홍보 동영상 분야 바우처
	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23년예산	288백만원

□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협업활성화)

개 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협동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등 지원	
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년예산	12,600백만원	
디자인 관련	지원내용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디자인 개발 수행업체 추천 및 결과물 검수 및 공동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 참가 등 홍보지원
	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22년예산	80백만원

【참고자료 3】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관련 사업

□ 디자인 산업 진흥(비R&D사업)

(1) 사업목적·내용

- ① (디자인정책연구 및 통계기반 구축) 디자인 정책연구 및 산업디자인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자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통한 디자인 정책 및 정보 서비스 선진화 지원
- ② (디자인 수요기반 확충) 디자인비즈니스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디자인코리아 개최,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등 전시·포상·디자인 콘텐츠 공유와 서비스디자인 혁신, 우수 디자인 인력양성 등
- ③ (디자인 주도의 혁신기업 육성) 디자인 경영역량 진단 및 혁신기업 전주기 지원으로 디자인을 통한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디자인인력의 맞춤형 매칭
- ④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설치 지원 등
- ⑤ (스타일산업 신생태계 구축) 패션, 뷰티, 리빙 등 3대 스타일 분야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중견·중소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8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8,131	26,840	26,493	34,554	31,043

○ 사업시행방법: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 수혜자: 디자인전문기업, 중소기업, 대학, 디자이너 및 예비디자이너 등

□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1) 사업목적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디자인혁신역량강화) 기술·디자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

내내역사업	목적	지원 내용
글로벌디자인 전문기업육성	국내 디자인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수출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전 영역에 전문 분야 역량강화	디자인 특화영역 역량강화 지원 및 디자인전문기업 중심으로 제조 기반 중소·중견기업과 협업하여 디자인 주도 감성제품 개발 지원
시장주도형 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 주도 사용자 경험 개선 혁신 제품 개발 및 포화된 제조 산업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지원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제조기업의 디자인싱킹 내재화를 통하여 혁신사고 역량 강화 및 시장을 주도할 우수제품 개발 지원
시장창출형 혁신디자인 개발	미래시장 대응을 위해 혁신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신시장 창출형 혁신제품 개발과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	미래시장 예측을 통한 新수요 발굴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 디자인 및 기술개발 구현을 위한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

②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 디자인R&D를 통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매출증대 촉진

③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급격한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2,123	44,722	59,725	59,213	55,011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디자인전문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역디자인센터, 대학 등

【참고자료 4】 산업디자인 관련 지원기관 현황

□ 지자체별 디자인 지원기관 (디자인지원센터 등)

- (지자체) 시·도별 주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실시
 - * 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와 함께 연계하여 신청하는 방식
- (서울시) (재)서울디자인재단 산하 서울디자인지원센터
 - *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인력 멘토링, 디자인기업 입주 지원 등
-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 산하 전북디자인센터
 - *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설계 멘토링, 디자인기업 입주 지원 등
- (인천) (재)인천테크노파크 산하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공예산업지원,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등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진단·개발, 디자인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 등

□ 디자인 대학

- 서울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등 약 50개 대학에서 디자인과 운영
 - * 산학연 디자인지원사업 프로젝트 등에 일부 대학 참여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정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조건) 전문인력 1명 이상, 디자인 포트폴리오 3건 이상 보유
- (현황) 14,316개사 ('24. 5월말 기준)